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탁·위탁 계약 체결 이전에도 기술자료 유용 금지>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3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소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수탁·위탁 계약 체결 이전에도 기술자료 유용 금지	2
※ 참고자료	4
1. 거래계약 이전 단계의 기술보호를 규정한 법률 현황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06. 13.
3. 회부연월일 : 2025. 0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개정을 통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제재하고 있음.

이에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수탁·위탁 계약 체결 이전에도 기술자료 유용 금지

현행	개정안
제25조(준수사항) ① (생략)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유용행위</u>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③·④ (생략)	제25조(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유용행위</u>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 ----- 1.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위탁기업의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음.¹⁾

개정안은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 대해서도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계약체결 이전 시점부터 이미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는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계약 성립 이전 단계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고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취지인 것으로 보임.

1) 위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제26조), 수탁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제27조), 분쟁조정(제28조),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 부과(제28조의2)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 501개사 중 17개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계약체결 전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가 64.7%로 나타났다. 2023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아이디어 탈취피해를 경험했던 중소기업 14개사는 탈취시점으로 사업제안(48.8%), 거래과정(39.9%), 사업공모(37.6%), 사업입찰(29.8%) 순으로 답변(복수응답)하였음.

또한 동 개정안은 최종 계약체결을 전제로 위탁기업의 계약체결 전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법 적용 대상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미 2022년 1월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²⁾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모두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3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 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참고자료】

1

거래계약 이전 단계의 기술보호를 규정한 법률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주요내용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u>)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 관계 형성을 전제로 계약 체결 이전 보호('22.1월 개정)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제2조(정의)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u>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u> 나. <u>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u> 다. <u>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u> ※ 수탁·위탁,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유무와 무관하게 보호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u>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